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하나UBS배당60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변경내용 : 펀드명 및 환매수수료 변경, 종류형 C-P,C-P2, W, S 수익증권 신설 및 비교지수 변경

2.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현 행	정정후
펀드명	하나UBS 배당60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코리아배당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제3조(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10. 신설 11. 신설 12. 신설 13. 신설	③ 10.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1.종류 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12.종류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3.종류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제10조(수익증 권의 발행 및 예탁)	10. 신설 11. 신설 12. 신설 13. 신설	10.종류 S 수익증권 11.종류 W 수익증권 12.종류 C-P 수익증권 13.종류 C-P2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③ 신설	③ [종류S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W 수익증권]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종류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87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종류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87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 C1, C2, C3, C4, C5, C-F, C-W, S 수익증권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 90일미만 이익금의 30%</p> <p>2. <u>종류 C-P, C-P2 수익증권 : 없음</u></p>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P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C-P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 투자설명서

구 분	현 행	변 경(안)
펀드명	하나UBS 배당60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코리아배당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부 1.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u>S 추가</u> <u>W 추가</u> <u>C-P 추가</u> <u>C-P2 추가</u>
제2부 1.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u>S 추가</u> <u>W 추가</u> <u>C-P 추가</u> <u>C-P2 추가</u>
제2부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u>2015년 07월 09일</u> : 펀드명 및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형 C-P, C-P2, W, S 수익증권 신설 및 비교지 수 변경
제2부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u>S 추가</u>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u>W 추가</u>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정신탁 <u>C-P 추가</u>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

		<p>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u>C-P2 추가</u></p> <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p>
<p>제2부</p> <p>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p>	<p>< 생략 ></p>	<p>< 현행과 같음 ></p> <p><u>S 추가</u></p> <p><u>W 추가</u></p> <p><u>C-P 추가</u></p> <p><u>C-P2 추가</u></p>
<p>제2부</p> <p>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가. 투자전략</p> <p><생략></p> <p>(2) 비교지수(Benchmark) :</p> <p>KODI 수익률 X 100%</p> <p>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중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KOD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p>	<p>가. 투자전략</p> <p><생략></p> <p>(2) 비교지수(Benchmark) :</p> <p>KOSPI 수익률 X 100%</p> <p>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p>
<p>제2부</p> <p>11. 매입, 환 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 용기준, 가. 매 입 나. 환매</p>	<p>< 생략 ></p> <p>(2) 종류별 가입자격</p>	<p>< 현행과 같음 ></p> <p>(2) 종류별 가입자격</p> <p><u>S 추가</u></p>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p> <p><u>W 추가</u></p> <p>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정신탁</p>

	<p>(3)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u>C-P 추가</u>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u>C-P2 추가</u>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p> <p>(3) 환매수수료 1. 종류 A, A-E, C1, C2, C3, C4, C5, C-F, W, S 수익증권: - 3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p> <p><u>2. 종류 C-P, C-P2 : 없음</u></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투자신탁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 /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p>	<p>< 생략 ></p>	<p>< 현행과 같음 ></p> <p>[종류S 수익증권] 추가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종류W 수익증권] 추가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종류C-P 수익증권] 추가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87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종류C-P2 수익증권] 추가</p>

표		<p>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946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874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5) 신설</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p> <p>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p>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 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 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 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천재지변

		<table border="1"> <tr> <td data-bbox="906 262 1082 645">수령시 부득이한 경우</td> <td data-bbox="1082 262 1375 645">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td> </tr> <tr> <td data-bbox="906 645 1082 891">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td> <td data-bbox="1082 645 1375 891">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td> </tr> <tr> <td data-bbox="906 891 1082 1034">연금 계좌 승계</td> <td data-bbox="1082 891 1375 1034">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td> </tr> </table>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 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 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p>*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p>									
		<p>[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90 1415 1021 1460">구 분</th> <th data-bbox="1021 1415 1375 1460">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90 1460 1021 1563">해지가산 세</td> <td data-bbox="1021 1460 1375 1563">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td> </tr> <tr> <td data-bbox="890 1563 1021 1899">특별 중 도해지 (연금외 수령) 사 유</td> <td data-bbox="1021 1563 1375 1899">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td> </tr> <tr> <td data-bbox="890 1899 1021 1998">특별중도 해지</td> <td data-bbox="1021 1899 1375 1998">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td> </tr> </tbody> </table>	구 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 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특별 중 도해지 (연금외 수령) 사 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 해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구 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 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특별 중 도해지 (연금외 수령) 사 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 해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table border="1"> <tr> <td>사유시 과세</td> <td>해지가산세 없음</td> </tr> <tr> <td>사망으로 인한 해 지시 과 세</td> <td>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td> </tr> </table>	사유시 과세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 지시 과 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사유시 과세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 지시 과 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6) 신설	<p>* '13.1.1~'13.2.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p> <p>※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p> <p>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① 세액공제(2014.1.1 부터)</p> <p>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② 과세이연</p> <p>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p> <p>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p> <p>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p>					

		<p>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	업데이트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라. 운용자산규모 (최신일 기준 업데이트)</p>	<p>라. 운용자산규모 (최신일 기준 업데이트)</p>